

경운대학교 학습역량강화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운대학교 학습역량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편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습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

제3조(주관 및 운영) ① 우리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한 주관부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진단 및 컨설팅
2.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총괄
3.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결과 분석 및 개선
4.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② 학습역량강화지원 운영부서는 학습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계획
2.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성과 결과보고
3.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3.01.>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을 최소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은 해당 경력과 자격이 인정되는 전임교원, 교직원, 외부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4. 그 외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9.01.>

제6조(운영부서)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부서(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9.01., 2021.10.01.>

1. 교수학습지원센터
2. 스토리라이팅센터
3. 삭제 <2019.09.01.>
4. 국제교육원
5. 삭제 <2019.09.01.>
6. 삭제 <2019.09.01.>
7. 대학생활지원센터
8. 기타 학생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부서

[제목개정 2019.09.01.]

제7조(운영절차)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정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한다.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09.01.>

② 삭제 <2019.09.01.>

③ 위원회는 위 제6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운영부서(센터)의 학습역량강화 지원프로그램 자체운영성과보고를 상정 받아 학습역량강화지원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한다. <개정 2019.09.01.>

④ 삭제 <2019.09.01.>

제8조(환류) ①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각 운영부서에서 상정된 운영부서별 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심의를 한다. <개정 2019.09.01.>

② 검토 및 심의를 마친 각 운영부서별 운영계획서를 비교과과정혁신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0.03.01.>

③ 삭제 <2019.09.01.>

④ 학습역량강화지원 운영성과 분석 결과 및 도출된 개선안을 비교과과정혁신위원회로 상정한다.<개정 2019.09.01., 2020.03.01.>

제9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

제11조(운영세칙) 학습역량강화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